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3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이 2012.9.22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 수수료 징수 요율표 정비 **【별표 1】(제3조 관련)**

· 신설 : 14종 (수산물가공업신고 외 13종)
→ 우리군 여건에 필요한 수수료 반영

· 변경 : 4종 (환지 증명 외 3종)
→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표준금액 대로 변경

· 삭제 : 21종 (인감증명 외 20종)
→ 상위법에서 수수료 금액 명시된 자료 등

○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안 제5조 제2항)

· 현금 → 현금 또는 신용카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도입 확대
도 새마을봉사과-7355(2012.8.2)호

○ 법률 제11399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제2조
도 세정과-12035(2012.9.27)호

나. 예산조치 : 민원봉사과

○ 2013년 본 예산액 1,500천원

· 민원수수료카드 이용료 1,000천원

(행정안전부에서 전지자체 계약 체결 시 카드수수료 2%이내 예정)

· 카드단말기 구입 1대 500천원

(군청민원실 시범시행 후 읍·면 확대 예정)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12.11.21～ 12.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석평가 제외대상으로 특기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생 략)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③(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③(현행과 같음)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삭제〉			
①인감증명	1통	600		①인감증명〈삭제〉			
②인감의 개인신고	1건	600		②인감의 개인신고〈삭제〉			
7.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7.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생략)	(생략)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		②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	
③~⑩	(생략)	(생략)		③~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기타제증명				11. 기타제증명			
①~⑤	(생략)	(생략)		①~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민사소송 제524조의11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1건	300		⑥민사소송 제524조의11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삭제〉			
⑦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건	800		⑦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삭제〉			
3. 농수산관계				3. 농수산관계			
①~③	(생략)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도축검사수수료				④도축검사수수료〈삭제〉			
가. 소, 말	1두	400		가. 소, 말〈삭제〉			
나. 돼지, 양	〃	80		나. 돼지, 양〈삭제〉			
다. 닭, 오리	100두	150		다. 닭, 오리〈삭제〉			
라. 칠면조, 거위	10두	40		라. 칠면조, 거위〈삭제〉			
마. 메추리, 비둘기	100두	100		마. 메추리, 비둘기〈삭제〉			
바. 개, 사슴	1두	20		바. 개, 사슴〈삭제〉			
사. 토끼	10두	40		사. 토끼〈삭제〉			
⑤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설 2008.3.6>	1건	3,200		⑤수산물가공업 등록 <신설 2008.3.6><삭 제>			
⑥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신설 2008.3.6>	1건	3,200		⑥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⑦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신설 2008.3.6>	1건	4,000		⑦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삭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⑧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신설 2008.3.6>	1건	3,200		⑧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	
⑨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신설2008.3.6>	1건	3,200		⑨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1건	**5,000**	
⑩<신설>				⑩수산물가공업신고	1건	1,000	
⑪<신설>				⑪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⑫<신설>				⑫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공동어업)	1건	7,500	
⑬<신설>				⑬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⑭<신설>				⑭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1건	2,000	
⑮<신설>				⑮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	1건	1,000	
⑯<신설>				⑯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1건	2,000	
⑰<신설>				⑰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1건	1,000	
⑱<신설>				⑱증서등의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허가사항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⑲<신설>				⑲어선등록및변경등록신청	1건	3,000	
⑳<신설>				⑳어선원부의열람및등본·초본발급	1건	800	
㉑<신설>				㉑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	
㉒<신설>				㉒비료생산업등록	1건	30,000	
㉓<신설>				㉓비료수입업등록	1건	20,000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6. 보건, 사회관계				6. 보건, 사회관계			
①~⑪	(생략)	(생략)		①~⑪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⑫숙박업 신규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⑫숙박업 신규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삭제〉			
○ 호텔업	1건	140,000		○ 호텔업〈삭제〉			
○ 휴양콘도미니엄업	〃	140,000		○ 휴양콘도미니엄업〈삭제〉			
○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	〃	50,000		○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삭제〉			
○ 여인숙업	〃	10,000		○ 여인숙업〈삭제〉			
⑬숙박업의 신고				⑬숙박업의 신고〈삭제〉			
○ 호텔업	1건	70,000		○ 호텔업〈삭제〉			
○ 휴양콘도미니엄업	〃	70,000		○ 휴양콘도미니엄업〈삭제〉			
○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	〃	25,000		○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삭제〉			
○ 여인숙업	〃	5,000		○ 여인숙업〈삭제〉			
⑭목욕장업신규영업신규(지위승계포함)				⑭목욕장업신규영업신규(지위승계포함)〈삭제〉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가족탕업, 한증막업)	1건	30,000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가족탕업, 한증막업)〈삭제〉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터키탕업,복합목욕장업)	〃	80,000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터키탕업,복합목욕장업)〈삭제〉			
⑮목욕장업 변경신고				⑮목욕장업 변경신고〈삭제〉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가족탕업,한증막업)	〃	15,000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가족탕업,한증막업) 〈삭제〉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터키탕업,복합목욕장업)	〃	40,000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터키탕업,복합목욕장업)〈삭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⑯～⑰	(생략)	(생략)		⑯～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⑱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규영업신고 (지위승계 포함)	1건	10,000		⑱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규영업신고 (지위승계 포함)〈삭제〉			
⑲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	5,000		⑲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삭제〉			
⑳세척제제조업신규영업신고 (지위승계포함)	〃	20,000		⑳세척제제조업신규영업신고 (지위승계포함)〈삭제〉			
㉑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	10,000		㉑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삭제〉			
㉒공중위생업소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000		㉒공중위생업소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㉓이·미용사 신규 면허신청	〃	10,000		㉓이·미용사 신규 면허신청 〈삭제〉			
㉔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5,000		㉔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삭제〉			
㉕공중이용시설신규신고(지위승계포함)	〃	20,000		㉕공중이용시설신규신고(지위승계포함)〈삭제〉			
㉖공중이용시설 변경신고	〃	10,000		㉖공중이용시설 변경신고 〈삭제〉			
㉗～㉜	(생략)	(생략)		㉗～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문화공보관계				7. 문화공보관계			
①～⑩	(생략)	(생략)		①～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⑪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1건	500		⑪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삭제〉			
⑫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300		⑫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삭제〉			
⑬～⑮	(생략)	(생략)		⑬～⑮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삭 제>			
①<삭 제>			
②<삭 제>			
2. 병적에 관한 증명			
①병적증명 <삭 제>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삭 제> <2008.3.6>			
②부양사실 증명	1통	300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영업주	1통	500	
②중소기업자	〃	500	
③광업·공업·상업	〃	500	
④농가·비농가	〃	200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납세필 및 등록필	1 통	300	
②생산실적	〃	300	
③수출실적	〃	300	
④납품실적	〃	300	
⑤건물사용	〃	300	
⑥공장 원료수입	〃	300	
⑦분배농지 상환완료	〃	300	
⑧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	300	
⑨공장등록증명 <개정 2008.3.6>	1건	1,000	
⑩실수요자증명	〃	300	
⑪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가소용량	1통	3,000	
· 확정소요량	〃	1,000	
⑫시설보유증명	〃	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⑬(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	
⑭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500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미분배 농지	1통	300	
②공부외 등·초본 교부	〃	300	
· 대장문서	〃	500	
· 토지도면	〃	700	
· 건물도면	〃	500	
③지적공부 열람			
· 대장	1필지	300	
· 도면	〃	400	
④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②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1,000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	1,500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	첨부도면 1매(21㎝×17㎝)당	300 가산	
④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⑤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300	
⑥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300	
⑦체비지 분할 신청	〃	300	
⑧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⑨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필지	300	
⑩개별공시지가확인서<신설 2007.1.3>	1필지당	800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납세증명 <삭 제>			
②세목별과세증명	1건	800	
③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	
②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300	
③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	
④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	300	
⑤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	
⑥보상금 지불명령	〃	300	
⑦면세용도 물품증명	〃	300	
⑧삭제 〈2005.7.28〉			
10. 주택에 관한 증명			
①철거사실 증명	1통	300	
②공(사)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300	
11. 기타 제증명			
①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	
②화재증명	〃	500	
③소방시설 완비 증명	〃	500	
④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	
⑤외국인등록표등본	〃	300	
⑥<삭 제>			
⑦<삭 제>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①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 건	1,000	
②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	500	
③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개정 2008.3.6>	〃	신규5,000 갱신또는 기간연장 3,000	
④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	1건	500	
⑤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⑥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중개업 등록 신청시<개정2008.3.6>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20,000	
⑧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1건	800	
⑨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	5,000	
2. 산림관계			
①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00	
②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신청	〃	500	
③개간허가증 교부	〃	500	
3. 농수산관계			
①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	
②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	
③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	500	
④**<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⑤**<삭 제>**			
⑥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신설 2008.3.6>	〃	**3,000**	
⑦**<삭 제>**			
⑧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신설 2008.3.6>	〃	**5,000**	
⑨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	〃	**5,000**	
<신설2008.3.6>	〃		
⑩수산물가공업신고**<신 설>**	〃	1,000	
⑪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	9,000	
<신 설>	〃		
⑫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신 설>**	〃	7,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⑬내수면어업 신고<신 설>	1건	1,000	
⑭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신 설>	〃	2,000	
⑮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신 설>	〃	1,000	
⑯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신 설>	〃	2,000	
⑰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신 설>	〃	1,000	
⑱증서등의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신 설>	〃	1,000	
⑲어선등록및변경등록신청<신 설>	〃	3,000	
⑳어선원부의열람및등본·초본발급<신 설>	〃	800	
㉑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 설>	〃	1,000	
㉒비료생산업등록<신 설>	〃	30,000	
㉓비료수입업등록<신 설>	〃	2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	
②공업단지 지정승인	〃	1,000	
③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	1,000	
④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500	
⑤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	1,000	
⑥ 주유소 · 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신 설>	〃	20,000	
⑦ 일반판매소 · 용제판매소 · 대체연료 판매소 신고<신설>	〃	10,000	
5. 건설관계			
①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	용지비
②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및 보상비 제외
③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채취허가	〃	점용료의 1/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④기타공유수면의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⑤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⑥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⑦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	1,000	
⑧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	1,000	
⑨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100	
⑩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	
⑪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신청	〃	500	
⑫공(사)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	
⑬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	
⑭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500	
⑮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	
⑯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500	
⑰체비지 소유자 확인	〃	500	
⑱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	500	
⑲건축물관리대장 등본초과	1매	300	
⑳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1당	100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1건	점용료의 1/1,000	
6. 보건, 사회관계			
① 삭제 <2007.1.3>			
② 삭제 <2007.1.3>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삭제 <2007.1.3>			
④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설 2007.1.3, 개정 2008.3.6>	1건	40,000	
⑤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 <신설 2007.1.3, 개정 2008.3.6>	〃	20,000	
⑥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설 2007.1.3, 개정>	〃	40,000	
⑦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신설 2007.1.3, 개정>	〃	20,000	
⑧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 <신설2007.1.3>	〃	10,000	
⑨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신설2007.1.3>	〃	10,000	
⑩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신설2007.1.3>	〃	10,000	
⑪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신설2007.1.3>	〃	10,000	
⑫<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⑬<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⑭<삭 제> ○ <삭 제> ○ <삭 제>			
⑮<삭 제> ○ <삭 제> ○ <삭 제>			
⑯유기장업 신규 영업허가(지위승계 포함)	1건		
○ 컴퓨터게임장업	〃	40,000	
○ 종합유원시설업	〃	8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기타 유기장업	1건	40,000	
⑰유기장업 변경허가			
○ 컴퓨터게임장업	1건	20,000	
○ 종합유원시설업	〃	40,000	
○ 기타 유기장업	〃	20,000	
⑱<삭 제>			
⑲<삭 제>			
⑳<삭 제>			
㉑<삭 제>			
㉒공중위생업소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㉓<삭 제>			
㉔<삭 제>			
㉕<삭 제>			
㉖<삭 제>			
㉗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0	
㉘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	1,000	
㉙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	500	
㉚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500	
㉛묘지개장 허가신청	〃	500	
㉜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500	
7. 문화공보관계			
①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	
②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300	
③공연장 설치허가			
가. 공연장	〃	10,000	
나. 가설 공연장	〃	3,000	
다. 임시 공연장	〃	500	
④공연장 증축허가			
가. 공연장	〃	5,000	
나. 가설 공연장	〃	1,500	
다. 임시 공연장	〃	15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⑤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300	
⑥각본 등 심사신청	〃	1,000	
⑦공연장 양수신고	〃	500	
⑧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	6,000	
⑨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신청	〃	2,000	
⑩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	500	
⑪<삭 제>			
⑫<삭 제>			
⑬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1건	1,000	
⑭음반판매업자 등록변경신청	〃	500	
⑮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500	
⑯체육시설업의 신고<신설2008.3.6>	〃	30,000	
⑰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신설2008.3.6>	〃	10,000	
8. 기타 제증명등 원인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1통	300	